

자산보관계약서

본 자산보관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6년 6월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위탁자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주 소: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
주 소: 서울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전 문



1.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그 후 별지-1 신탁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2. 위탁자는 영업인가 취득을 전제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보유한 자산을 보관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수탁자를 선임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를 통하여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양 당사자는 자산보관업무의 내용 및 계약 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자산보관계약서

2016. 6. _.

위탁자: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여 기타 위탁자의 모든 수입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은행지점에 위탁자 명의로 개설할 계좌를 말한다.

“자금관리계좌”란 대출금입금계좌나 수입금관리계좌 등 다른 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추후 이체하고, 그 밖에 위탁자의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금이나 준비금 등을 입금하여, 위탁자의 종합적인 현금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의 은행지점에 위탁자 명의로 개설할 계좌를 말한다.

“자산보관계좌”라 함은 위탁자가 취득하는 증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개설할 계좌를 말한다.

제3조 (자산보관업무의 범위)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자산보관업무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부동산의 보관 및 관리

-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장,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의 보존 및 보관
- ②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등기 이전시 신탁등기 해지
- ③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 ① 증권의 양도 및 보관.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된 증권은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증권에 관한 각종 권리 행사, 증권에 대해 인정되는 배당금, 원리금 기타 각종 금액의 수령

다 음

제1조 (자산보관기관의 선임)

위탁자는 수탁자를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본 계약에 따라 부동산·증권·현금 등 위탁자의 자산 일체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수락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관련 수탁회사”라 함은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 판매회사를 통칭한다.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일반사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투자, 운용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판매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출금입금계좌”란 위탁자가 주택도시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거나 대출한 차입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은행지점에 위탁자의 명의로 개설할 계좌를 말한다.

“수입금관리계좌”란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을 처분(분양) 및 임대함에 따라 수령하게 될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연체료 등을 포함하

본건 토지 목록

- ① 신정3지구 공공주택용지 A6 BL(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0-8)
- ②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용지 2-14BL(지번 부여 전)
- ③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용지 2BL(지번 부여 전)
- ④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서울 강동구 강일동 730-2,3,4)

